의안번호		제 957 호
의	결	년 월 일
연 월	일	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

의 안 번 호 957 제출연월일: 2022년 1월 10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개정('21.12.15.공포, '22.1.13.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순 인용조문 변경
 -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(시행령 94조 → 95조)
 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(시행령 76조 → 74조)
 -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(시행령 78조 → 76조)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ㆍ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6.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 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94조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95조"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76조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74조"로 한다.

제3조(「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78조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76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1.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	제1조(목적)
제1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<u>제94조</u> 에	<u>제95조</u> 에
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	
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	
함을 목적으로 한다.	

2.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설치) ①「지방자치법」	제15조(설치) ①
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6조	
및 같은 법 시행령 <u>제76조</u> 에 따	<u>제74조</u>
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	
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	
위하여 충북도립대학교(이하 "	
대학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3.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제자유구	제1조(목적)
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	
제27조·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	
법 시행령 제28조·제29조「지방자	
치법」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	
<u>제78조</u> 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	제76조
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	
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	
한다.	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, 주민의 지방자 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 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,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 시키며,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